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0.11일 포함)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00-1890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 민영주택 |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10.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6개월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4.10.11.(금) | 2024.10.21.(월) | 2024.10.22.(화) | 2024.10.23.(수) | 2024.10.29.(화) | 2024.10.31.(목)~ 2024.11.04.(월) | 2024.11.11.(월)~ 2024.11.13.(수) |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둔산해링턴플레이스리버파크.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
|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 | | X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0.1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10.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4.10.21.(월) | 2024.10.22.(화) | 2024.10.23.(수) | 2024.10.29.(화) | 2024.10.31.(목)~ 2024.11.04.(월) | 2024.11.11.(월)~ 2024.11.13.(수) |
|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7-5번지)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 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전광역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6개월 | 6개월 |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 - 27468호(2024.10.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4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2~35층 3개동 총 3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30세대(기관추천 24세대, 다자녀가구 32세대, 신혼부부 43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21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8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비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2024000577 | 01 | 084.4849A | 84A | 84.4849 | 26.1386 | 110.6235 | 64.7271 | 175.3506 | 28.58 | 183 | 18 | 18 | 32 | 5 | 16 | 89 | 94 | 6 |
| | 02 | 084.5074B | 84B | 84.5074 | 27.5091 | 112.0165 | 64.7443 | 176.7608 | 28.59 | 61 | 6 | 6 | 11 | 2 | 5 | 30 | 31 | 2 |
| | 03 | 115.5074 | 115 | 115.5074 | 33.5949 | 149.1023 | 88.4946 | 237.5969 | 39.08 | 87 | 0 | 8 | 0 | 3 | 0 | 11 | 76 | 3 |
| | 04 | 142.7761A | 142A | 142.7761 | 45.7922 | 188.5683 | 109.3862 | 297.9545 | 48.30 | 2 | 0 | 0 | 0 | 0 | 0 | 0 | 2 | 0 |
| | 05 | 142.1569B | 142B | 142.1569 | 44.5811 | 186.7380 | 108.9118 | 295.6498 | 48.09 | 2 | 0 | 0 | 0 | 0 | 0 | 0 | 2 | 0 |
| | 06 | 182.2645 | 182 | 182.2645 | 55.2180 | 237.4825 | 139.6398 | 377.1223 | 61.66 | 1 | 0 | 0 | 0 | 0 | 0 | 0 | 1 | 0 |
| 합 계 | | | | | | | | | | 336 | 24 | 32 | 43 | 10 | 21 | 130 | 206 | 11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구 분(약식) | | 84A | 84B | 115 | 합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8 | 2 | 0 | 10 |
| | 국가유공자 | 2 | 1 | 0 | 3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2 | 0 | 0 | 2 |
|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2 | 1 | 0 | 3 |
| | 중소기업 근로자 | 2 | 1 | 0 | 3 |
| | 시책추진 해당자 | 2 | 1 | 0 | 3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8 | 6 | 8 | 32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32 | 11 | 0 | 43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5 | 2 | 3 | 1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16 | 5 | 0 | 21 |
| 합 계 | | 89 | 30 | 11 | 130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원)

| 타입 (약식표기) | 구분 | 층 |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 (10%) | | 중도금 (60%) | | | | | | 잔금 (3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합계 | 1회 | 2회 | 1회 (10%) | 2회 (10%) | 3회 (10%) | 4회 (10%) | 5회 (10%) | 6회 (10%) | 입주 지정일 |
| | | | | | | | | 30일 이내 | 2025.05.30 | 2025.10.30 | 2026.03.30 | 2026.12.30 | 2027.04.30 | 2027.08.30 | | |
| 84A | 102동 (1,3호) | 3F~5F | 12 | 300,941,000 | 373,059,000 | - | 674,000,000 | 10,000,000 | 30일 이내 | 2025.05.30 | 2025.10.30 | 2026.03.30 | 2026.12.30 | 2027.04.30 | 2027.08.30 | 202,200,000 |
| | | 6~10F | 20 | 302,280,500 | 374,719,500 | - | 677,000,000 | 10,000,000 | 5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203,100,000 |
| | | 103동(1,3호) | 60 | 305,406,000 | 378,594,000 | - | 684,000,000 | 10,000,000 | 5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205,200,000 |
| | 102동 (2호) | 26~34F | 30 | 307,192,000 | 380,808,000 | - | 688,000,000 | 10,000,000 | 58,800,000 | 68,800,000 | 68,800,000 | 68,800,000 | 68,800,000 | 68,800,000 | 68,800,000 | 206,400,000 |
| | | 3F~5F | 6 | 304,066,500 | 376,933,500 | - | 681,000,000 | 10,000,000 | 58,100,000 | 68,100,000 | 68,100,000 | 68,100,000 | 68,100,000 | 68,100,000 | 68,100,000 | 204,300,000 |
| | | 6~10F | 10 | 305,406,000 | 378,594,000 | - | 684,000,000 | 10,000,000 | 5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68,400,000 | 205,200,000 |
| 103동(2호) | 11~25F | 30 | 308,531,500 | 382,468,500 | - | 691,000,000 | 10,000,000 | 59,100,000 | 69,100,000 | 69,100,000 | 69,100,000 | 69,100,000 | 69,100,000 | 69,100,000 | 207,300,000 | |
| | 26~34F | 15 | 310,317,500 | 384,682,500 | - | 695,000,000 | 10,000,000 | 59,50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69,500,000 | 208,500,000 | |
| 84B | 102동 (4호) | 3F~5F | 6 | 298,262,000 | 369,738,000 | - | 668,000,000 | 10,000,000 | 5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66,800,000 | 200,400,000 | |

| | | | | | | | | | | | | | | | | | |
|------|-----------------------|-----------------------|--------|-------------|---------------|-------------|---------------|-------------|-------------|-------------|-------------|-------------|-------------|-------------|-------------|-------------|-------------|
| 115 | 103동(4호) | 6~10F | 10 | 299,601,500 | 371,398,500 | - | 671,000,000 | 10,000,000 | 5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67,100,000 | 201,300,000 | |
| | | 11~25F | 30 | 302,727,000 | 375,273,000 | - | 678,000,000 | 10,000,000 | 5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67,800,000 | 203,400,000 |
| | | 26~34F | 15 | 304,513,000 | 377,487,000 | - | 682,000,000 | 10,000,000 | 58,200,000 | 68,200,000 | 68,200,000 | 68,200,000 | 68,200,000 | 68,200,000 | 68,200,000 | 68,200,000 | 204,600,000 |
| | 101동 (1호) | 3F~5F | 3 | 400,302,000 | 495,180,000 | 49,518,000 | 945,000,000 | 10,000,000 | 84,500,000 | 94,500,000 | 94,500,000 | 94,500,000 | 94,500,000 | 94,500,000 | 94,500,000 | 94,500,000 | 283,500,000 |
| | | 6~10F | 5 | 402,420,000 | 497,800,000 | 49,780,000 | 950,000,000 | 10,000,000 | 8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285,000,000 |
| | | 11~25F | 15 | 406,232,400 | 502,516,000 | 50,251,600 | 959,000,000 | 10,000,000 | 85,900,000 | 95,900,000 | 95,900,000 | 95,900,000 | 95,900,000 | 95,900,000 | 95,900,000 | 95,900,000 | 287,700,000 |
| | 101동 (2호) | 26~31F | 6 | 408,350,400 | 505,136,000 | 50,513,600 | 964,000,000 | 10,000,000 | 86,400,000 | 96,400,000 | 96,400,000 | 96,400,000 | 96,400,000 | 96,400,000 | 96,400,000 | 96,400,000 | 289,200,000 |
| | | 3F~5F | 3 | 402,420,000 | 497,800,000 | 49,780,000 | 950,000,000 | 10,000,000 | 8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285,000,000 |
| | | 6~10F | 5 | 404,538,000 | 500,420,000 | 50,042,000 | 955,000,000 | 10,000,000 | 85,50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286,500,000 |
| | 101동 (3호) | 11~25F | 15 | 408,350,400 | 505,136,000 | 50,513,600 | 964,000,000 | 10,000,000 | 86,400,000 | 96,400,000 | 96,400,000 | 96,400,000 | 96,400,000 | 96,400,000 | 96,400,000 | 96,400,000 | 289,200,000 |
| | | 26~31F | 6 | 410,468,400 | 507,756,000 | 50,775,600 | 969,000,000 | 10,000,000 | 86,900,000 | 96,900,000 | 96,900,000 | 96,900,000 | 96,900,000 | 96,900,000 | 96,900,000 | 96,900,000 | 290,700,000 |
| | | 3F~5F | 3 | 396,066,000 | 489,940,000 | 48,994,000 | 935,000,000 | 10,000,000 | 83,500,000 | 93,500,000 | 93,500,000 | 93,500,000 | 93,500,000 | 93,500,000 | 93,500,000 | 93,500,000 | 280,500,000 |
| | 142A | 102동 (1호) 103동(1호) | 6~10F | 5 | 398,184,000 | 492,560,000 | 49,256,000 | 940,000,000 | 10,000,000 | 84,000,000 | 94,000,000 | 94,000,000 | 94,000,000 | 94,000,000 | 94,000,000 | 94,000,000 | 282,000,000 |
| | | | 11~25F | 15 | 402,420,000 | 497,800,000 | 49,780,000 | 950,000,000 | 10,000,000 | 8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95,000,000 | 285,000,000 |
| | | | 26~31F | 6 | 404,538,000 | 500,420,000 | 50,042,000 | 955,000,000 | 10,000,000 | 85,50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95,500,000 | 286,500,000 |
| 142B | 102동 (2호) 103동(2호) | 펜트 | 2 | 777,729,600 | 962,064,000 | 96,206,400 | 1,836,000,000 | 10,000,000 | 173,600,000 | 183,600,000 | 183,600,000 | 183,600,000 | 183,600,000 | 183,600,000 | 183,600,000 | 550,800,000 | |
| 182 | 101동 (1호) | 펜트 | 1 | 989,106,000 | 1,223,540,000 | 122,354,000 | 2,335,000,000 | 10,000,000 | 223,500,000 | 233,500,000 | 233,500,000 | 233,500,000 | 233,500,000 | 233,500,000 | 233,500,000 | 700,500,000 | |

IV 특별공급

| 구분 | 내용 | |
|-----------|--|--|
| 공급기준 |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 |
| | 구분 | 처리방법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p>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p> <p>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p>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p> <p>모두 부적격 처리</p> |
| 무주택 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에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 |
|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 |
| 청약통장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 |

| | | | | |
|---|---|-------------|----------|-------------------|
| 자격요건 |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 |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 |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 | | |

| | | |
|-------------|---------------------------------------|--|
| IV-1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4세대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 | | | | | | | | | |
| 추천기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70%;">기 관</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td> <td>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td> </tr> <tr> <td>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td> </tr> <tr> <td>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td> <td>군국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r> <td>중소기업근로자</td> <td>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td> </tr> <tr> <td>시책추진 해당자</td> <td>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td> </tr> </tbody> </table> | 구 분 | 기 관 | 장애인 |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군국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근로자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시책추진 해당자 |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 구 분 | 기 관 | | | | | | | | | | | | |
| 장애인 |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 | | | | | | | | | | | |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군국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 | | | | | | | | | | |
| 중소기업근로자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 | | | | | | | | | | |
| 시책추진 해당자 |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p> <p>■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p> <p>-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②배점</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배점항목</th> <th>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th> <th></th>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40</td> <td>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3명</td> <td>35</td> </tr> <tr> <td>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15</td> <td>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2명</td> <td>10</td> </tr> <tr> <td>1명</td> <td>5</td> </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 <td rowspan="2">5</td> <td>3세대 이상</td> <td>5</td> <td rowspan="2">-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 </tr> <tr> <td>한부모 가족</td> <td>5</td> </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 <td rowspan="3">20</td> <td>10년 이상</td> <td>20</td> <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5</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 <td rowspan="3">15</td> <td>10년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0</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5</td> </tr> <tr> <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 <td>5</td> <td>10년 이상</td> <td>5</td> <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 </tr> <tr> <td colspan="5" data-bbox="297 1396 2139 1524">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td> </tr> </tbody> </table>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기준 | 점수 | 계 | 100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3명 | 35 | 2명 | 25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2명 | 10 | 1명 | 5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한부모 가족 | 5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 | | | |
|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명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명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명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명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부모 가족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09 643 2128 1117"> <thead> <tr> <th data-bbox="309 643 533 678">단계</th> <th data-bbox="533 643 869 678">소득구분</th> <th data-bbox="869 643 2128 678">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9 678 533 786">1단계</td> <td data-bbox="533 678 869 786">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 data-bbox="869 678 2128 786">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data-bbox="309 786 533 895">2단계</td> <td data-bbox="533 786 869 895">신생아 일반공급 (5%)</td> <td data-bbox="869 786 2128 895">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data-bbox="309 895 533 971">3단계</td> <td data-bbox="533 895 869 971">우선공급 (35%)</td> <td data-bbox="869 895 2128 971">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data-bbox="309 971 533 1048">4단계</td> <td data-bbox="533 971 869 1048">일반공급 (15%)</td> <td data-bbox="869 971 2128 1048">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data-bbox="309 1048 533 1117">5단계</td> <td data-bbox="533 1048 869 1117">추첨공급</td> <td data-bbox="869 1048 2128 1117">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border="1" data-bbox="309 1297 2128 1444"> <thead> <tr> <th data-bbox="309 1297 533 1332">순위</th> <th data-bbox="533 1297 2128 133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9 1332 533 1388">1순위</td> <td data-bbox="533 1332 2128 1388">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 data-bbox="309 1388 533 1444">2순위</td> <td data-bbox="533 1388 2128 1444">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순위 | 내용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4.10.11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비고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004,510원~ 9,806,313원 | 8,248,468원~ 11,547,854원 | 8,775,072원~ 12,285,099원 | 9,563,283원~ 13,388,595원 | 10,351,494원~ 14,492,090원 | 11,139,705원~ 15,595,586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405,412원~ 11,207,214원 | 9,898,161원~ 13,197,547원 | 10,530,086원~ 14,040,114원 | 11,475,939원~ 15,301,251원 | 12,421,793원~ 16,562,389원 | 13,367,64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9,806,314원~ | 11,547,855원~ | 12,285,100원~ | 13,388,596원~ | 14,492,091원~ | 15,595,58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 | | | | | | | | | | | |

IV-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0세대

| 구분 | 내용 |
|----|----|
|----|----|

| <p>대상자</p>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p> <p>■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당첨자 선정방법</p> |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p> <p>■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p> <p>■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p> <p>-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table border="1" data-bbox="304 518 2083 1252">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8">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8">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p>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p>*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 이상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명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비고</p> |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V-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21세대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p>■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p>■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첨공급</td> <t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td> </tr> </tbody> </table>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5단계 | 추첨공급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4.10.11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130% 이하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 9,105,863원~ 11,207,214원 | 10,723,008원~ 13,197,547원 | 11,407,593원~ 14,040,114원 | 12,432,268원~ 15,301,251원 | 13,456,942원~ 16,562,389원 | 14,481,61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17,823,52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17,823,527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40% | 60% |
| 전용면적 85㎡ 초과 | - | 100%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 | |
|------|--|----------------|---------------------|-----------------|---------------|
| 가입기간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 | | | | | | | | | | | |
|--|--|------------------------------|----|----|-----|-------------|----------|-----|---------------|-----------------------------|-----|---------------|------------------------------|
|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 | | | | | | | | | | |
|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 | | | | | | | | | | | |
|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 | | | | | | | | | | | |
|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계</th> <th style="width: 35%;">비율</th> <th style="width: 5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 | 단계 | 비율 | 내용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단계 | 비율 | 내용 | | | | | | | | | |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 | | | | | |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 | | | | | | | |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 | | | | | | | | |
|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p>*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 | | | | | | | | | | | | |
| <p>비고</p> |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 | | | | | | | | | |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4.10.21.(월) | 2024.10.22.(화) | 2024.10.23.(수) | 2024.10.29.(화) | 2024.10.31.(목)~ 2024.11.04.(월) | 2024.11.11.(월)~ 2024.11.13.(수) |
| 방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7-5번지) |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 | | |
|---|---|---------|-----------|---|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 | |
|---|---|--|
| |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p>※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p> <p>※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p> <p>※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p> <p>※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p> <p>■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 | |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p>-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p> <p>-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p> | |
| 공고단지 청약연습 | <p>-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p>-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p> <p>-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p>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p>-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p> <p>- 조회기간 : 2024.10.29.(화) ~ 2024.11.07(목) (10일간)</p> <p>-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p>-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p> <p>-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p> |
| | 문자 | <p>- 제공일시 : 2024.10.29.(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p> <p>-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p> <p>-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신분증 | 청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 | ○ | | 인감도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 | | ○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 | | ○ | 복무확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
| | | ○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청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청약자 및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청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출산 이행 각서 | | •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 |
| | ○ | 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청약자 |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및 혼인여부 확인, "상세" 발급 | |
| | ○ | 건강보험자격을실 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 ○ | 소득증빙서류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출산 이행 각서 | | •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 |
| | ○ | 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청약자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청약자 |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생애최초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청약자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여부 확인 | |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 | ○ | 건강보험자격을실 확인서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 | | | |
|------------------|---|-------------------|------------|--|
| | ○ | 소득증빙서류 | 세대원 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청약자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중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 | 위임장 | 청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인감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신분증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 | ○ | 도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 또는 날인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사가격증명원 등)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 ○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1)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①,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주민센터 |
| | |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 |
| | |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 | | | |
|------------------|-----|--|---|
| |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②주민센터 ③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농지대장 ②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주민센터 ②지자체 축산과 ③토지이음(www.eum.go.kr)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 명세표(직인날인)) | ①,②,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①,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 |
| | 자영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② 세무서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⑤ 등기소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① 해당직장/세무서 |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① 견본주택 비치 | |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② 세무서 |
|---|-------|

- ※ 군복무 중 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서류 외 소득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①, 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소득금액증명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② 세무서 ③ 건강보험공단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③ 위촉증명서 ④ 재직 증명서 | ①, ③, ④ 해당 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 서류발급 시 필수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신분증 | 청약자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 | ○ | |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 | ○ |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 | | ○ | 복무확인서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
| | | ○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청약자 및 세대원 |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 | | | | |
|---------------------------|---|------------------------|------|---|
|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입주자)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청약자 |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 | ○ | 당첨사실 확인서 |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 | 위임장 | 청약자 | • 건분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인감증명서 |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 도장 | | • 서명 또는 날인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 | |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 ○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예비입주자(당첨자) 선정일은 **2024.10.28.(월)** 입니다.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1)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 아파트·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며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및 별표1 제1호 가목2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됩니다.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 | |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
| 주택을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VI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구분 | 일정 | 계약 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4.11.11(월) ~ 2024.11.13(수) (3일간) 10:00 ~ 16:00 | 건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7-5번지) |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항목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전북은행 | 1013-01-5172576 | 우리자산신탁(주) |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1101홍길동'으로 기재)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접수 장소에 비치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접수 장소에 비치(※ 6억 초과주택에 한함) • ※ 분양가, 발코니 확장금액,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금액의 총합계 기준 • 수입인자 구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자(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자 구입 후 출력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신분증 | |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 ○ | | 인감도장 | | |
| | ○ |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 |
|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 인지세 납부 증명서 (정부수입인자) | 당첨자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 | ○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 |
| | ○ |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
| | ○ | | 위임장 | | |
| | ○ | | 신분증, 도장 |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청약통장 부활신청이 가능하나 해당기간동안 사용이 중지됩니다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위촉지역 3개월)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하여 납부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다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증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 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사업이며, 대출은 중도금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기존의 입주지정기간부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시행위탁사인 도담하우징(주)(이하 같음)가 납부하고,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의 경우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 |
|-----------|----------------------------|
| IX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

■ 발코니확장

1) 발코니확장 공사비

| 약식표기 | 공급가액 | 계약 시 | 계약 후 30일 이내 | 입주 시 | 비고 |
|------|------------|-----------|-------------|------------|----|
| | | 계약금 (10%) | 중도금 (10%) | 잔금 (80%) | |
| 84A | 32,500,000 | 3,250,000 | 3,250,000 | 26,000,000 | |
| 84B | 32,900,000 | 3,290,000 | 3,290,000 | 26,320,000 | |
| 115 | 43,700,000 | 4,370,000 | 4,370,000 | 34,960,000 | |
| 142A | 55,300,000 | 5,530,000 | 5,530,000 | 44,240,000 | |
| 142B | 54,800,000 | 5,480,000 | 5,480,000 | 43,840,000 | |
| 182 | 69,700,000 | 6,970,000 | 6,970,000 | 55,760,000 | |

2)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계약금, 중도금, 잔금) | 전북은행 | 1013-01-5172617 | 우리자산신탁(주) |

※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101동 1101호의 경우, 입금자명을 '1-1101홍길동'으로 기재)

3)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확장위치 등 세부사항(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세대 피해 등)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가구(위치, 형태 및 개수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 주방(식당), 알파룸, 드레스룸 등)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추가품목 선택 (유상옵션)

1) 시스템에어컨 (삼성)

| 약식표기 | 설치개소 | 설치위치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잔금 (90%) | 비고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 3개소 | 기본형 거실+주방+안방 | 4,900,000 | 490,000 | 4,410,000 | |
| 84B | | | 4,900,000 | 490,000 | 4,410,000 | |
| 115 | | | 4,900,000 | 490,000 | 4,410,000 | |
| 142A | | | 5,600,000 | 560,000 | 5,040,000 | |
| 142B | | | 5,600,000 | 560,000 | 5,040,000 | |
| 182 | | | 5,900,000 | 590,000 | 5,310,000 | |

| | | | | | | | |
|------|-----|------|----------------------|-----------|---------|-----------|----------------|
| 84A | 5개소 | 전실기준 |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 7,400,000 | 740,000 | 6,660,000 | |
| 84B | | | | 7,400,000 | 740,000 | 6,660,000 | |
| 115 | | | | 7,400,000 | 740,000 | 6,660,000 | 안방 평면 옵션 선택 시 |
| 115 | 6개소 | |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침실4 | 8,400,000 | 840,000 | 7,560,000 | 안방 평면 옵션 미선택 시 |
| 142A | | | | 8,900,000 | 890,000 | 8,010,000 | |
| 142B | | | | 8,900,000 | 890,000 | 8,010,000 | |
| 182 | | | | 9,600,000 | 960,000 | 8,640,000 | |

2) 가전제품

| 품 목 | | |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 (10%) 계약 시 | 잔금 (90%) 입주지정일 | 비고 |
|-----|------|-----------------|---|--------------------|-----------|-------------------|-------------------|------------------------|
| 주방 | 냉장고 | 빌트인냉장고+ 냉장고장 | 냉장 : BC1LAA1(G), 384L 냉동 : BC1F1AA(G), 321L 김치 : BCAA1AA(G), 324L | 84A | 5,400,000 | 540,000 | 4,860,000 | |
| | | | | 84B | 5,400,000 | 540,000 | 4,860,000 | |
| | | | | 115 | 9,400,000 | 940,000 | 8,460,000 | 빌트인 냉장고+냉장고장+홈바장식장 패키지 |
| | | | | 142A | 8,400,000 | 840,000 | 7,560,000 | |
| | | | | 142B | 8,400,000 | 840,000 | 7,560,000 | |
| | | | 냉장 : RCL284JBL/R 냉동 : F-A241JM/YM 김치 : RSK221YPL/R | 182 | 9,600,000 | 960,000 | 8,640,000 | 빌트인 냉장고+냉장고장+홈바장식장 패키지 |
| | | 식기세척기 | LG전자 : DIB22S | 전 주택형 | 1,100,000 | 110,000 | 990,000 | |
| | 렌지후드 | 독립형 | 하츠 : PSL-90G | | 790,000 | 79,000 | 711,000 | |
| | 인덕션 | 3구 | 쿠첸 : CEN-IF3A0NBA | | 460,000 | 46,000 | 414,000 | |
| | 욕실 | 복합환풍기 | 다기능 복합 건조기 | 힘펠 : FZD1-H130S_MD | | 590,000 | 59,000 | 531,000 |

3) 현관중문

| 품 목 | | |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 (10%) 계약 시 | 잔금 (90%) 입주지정일 | 비고 | |
|---------------------------|---------|--|--|------|-----------|-------------------|-------------------|-----------------------------------|----------------|
| 현관 중문 +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 현관 수동중문 | | | 84A | 1,300,000 | 130,000 | 1,170,000 | 현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
| | | | | 84B | 1,300,000 | 130,000 | 1,170,000 | | |
| | | | | 115 | 1,300,000 | 130,000 | 1,170,000 | | |
| | | | | 142A | 1,600,000 | 160,000 | 1,440,000 | 현관 스윙도어 | |
| | | | | 142B | 2,600,000 | 260,000 | 2,340,000 | 현관1 : 스윙도어 + 현관2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
| | | | | 182 | 2,500,000 | 250,000 | 2,250,000 | 현관 3연동 슬라이딩 도어*2 | |
| | 현관 자동중문 | | | | 84A | 2,500,000 | 250,000 | 2,250,000 | 현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 | | | | | 115 | 2,600,000 | 260,000 | 2,340,000 | |
| | | | | | | 142B | 3,600,000 | 360,000 | 3,240,000 |

4) 가구 및 마감재

| 품 목 |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잔금 (90%) | 비고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천정 | 감성조명 특화 | 84A | 7,100,000 | 710,000 | 6,390,000 | 거실 및 주방 우물천정 디밍 직·간접등 + 픽처레일등 |
| | | 84B | 7,600,000 | 760,000 | 6,840,000 | |
| | | 115 | 7,100,000 | 710,000 | 6,390,000 | |
| | | 142A | 9,100,000 | 910,000 | 8,190,000 | |
| | | 142B | 9,100,000 | 910,000 | 8,190,000 | |
| | | 182 | 10,100,000 | 1,010,000 | 9,090,000 | |
| 벽 |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 84A | 2,500,000 | 250,000 | 2,250,000 | |
| | | 84B | 3,400,000 | 340,000 | 3,060,000 | |
| | | 115 | 2,700,000 | 270,000 | 2,430,000 | |
| | | 142A | 2,600,000 | 260,000 | 2,340,000 | |
| | | 142B | 2,600,000 | 260,000 | 2,340,000 | |
| | | 182 | 2,900,000 | 290,000 | 2,610,000 | |
| 폴딩도어 | 현관 팬트리 | 84A | 1,900,000 | 190,000 | 1,710,000 | |
| | | 84B | 1,400,000 | 140,000 | 1,260,000 | |
| | | 115 | 2,200,000 | 220,000 | 1,980,000 | |
| 히든도어 | 히든도어+ 복도 시트판넬+ 욕실 도어스토퍼 | 84A | 7,900,000 | 790,000 | 7,110,000 | |
| | | 84B | 6,400,000 | 640,000 | 5,760,000 | |
| | | 115 | 6,900,000 | 690,000 | 6,210,000 | |
| | | 142A | 13,000,000 | 1,300,000 | 11,700,000 | |
| | | 142B | 13,000,000 | 1,300,000 | 11,700,000 | |
| | | 182 | 12,400,000 | 1,240,000 | 11,160,000 | |
| 불박이장 | 교차형 불박이장 | 115 | 2,200,000 | 220,000 | 1,980,000 | 여단이 타입 |
| | 슬라이딩 불박이장 (침실 2) | 84A | 1,800,000 | 180,000 | 1,620,000 | |
| | | 84B | 1,800,000 | 180,000 | 1,620,000 | |
| | | 115 | 1,900,000 | 190,000 | 1,710,000 | |
| | | 142A | 1,900,000 | 190,000 | 1,710,000 | |
| | | 142B | 1,900,000 | 190,000 | 1,710,000 | |
| | | 182 | 1,900,000 | 190,000 | 1,710,000 | |
| | 여단이 불박이장 (침실 3) | 84A | 1,500,000 | 150,000 | 1,350,000 | |
| | | 84B | 1,500,000 | 150,000 | 1,350,000 | |
| | | 115 | 1,600,000 | 160,000 | 1,440,000 | |
| | | 142A | 1,600,000 | 160,000 | 1,440,000 | |
| 142B | | 1,600,000 | 160,000 | 1,440,000 | | |

| | | | | | | |
|-------------|---|---------|-----------|---------|-----------|--|
| | | 182 | 1,600,000 | 160,000 | 1,440,000 | |
| 평면옵션 | 와이드 드레스룸 평면 | 115 | 2,200,000 | 220,000 | 1,980,000 | 와이드 드레스룸 평면 |
| 드레스룸 | 벽판넬 조명형 시스템 선반 | 84A | 2,100,000 | 210,000 | 1,890,000 | |
| | | 84B | 2,100,000 | 210,000 | 1,890,000 | |
| | | 115 | 2,400,000 | 240,000 | 2,160,000 | 와이드 드레스룸 미적용 |
| | | | 6,400,000 | 640,000 | 5,760,000 | 와이드 드레스룸 적용 |
| | | 142A | 2,100,000 | 210,000 | 1,890,000 | |
| | | 142B | 4,700,000 | 470,000 | 4,230,000 | |
| 다용도실 | 싱크볼+세탁수납장 | 182 | 2,900,000 | 290,000 | 2,610,000 | |
| | | 84A | 1,400,000 | 140,000 | 1,260,000 | 다용도실 : 싱크볼+세탁수납장 |
| | | 115 | 1,700,000 | 170,000 | 1,530,000 | |
| | | 142A | 1,700,000 | 170,000 | 1,530,000 | 다용도실 : 싱크볼+세탁수납장 보조주방 : 보조싱크대 |
| | | 142B | 1,100,000 | 110,000 | 990,000 | |
| 182 | 1,100,000 | 110,000 | 990,000 | | | |
| 주방고급특화 | 유리 상부장 + 주방 고급 싱크볼 + 상판 매립형 콘센트 + 미드웨이 액세서리 + 주방 고급수전 | 84A | 2,400,000 | 240,000 | 2,160,000 | 와이드 아일랜드 적용 |
| | | 84B | 1,000,000 | 100,000 | 900,000 | 주방 유리 상부장 + 주방 고급 싱크볼 + 주방 상판 매립형 콘센트 + 미드웨이 액세서리 + 주방 고급수전 |
| | | 115 | 2,000,000 | 200,000 | 1,800,000 | |
| | | 142A | 1,500,000 | 150,000 | 1,350,000 | |
| | | 142B | 1,500,000 | 150,000 | 1,350,000 | |
| | | 182 | 2,000,000 | 200,000 | 1,800,000 | |
| 주방 상판+벽체 | 세라믹타일 | 84A | 4,900,000 | 490,000 | 4,410,000 | 주방고급특화 미선택 시 주방고급특화 선택 시 |
| | | | 5,100,000 | 510,000 | 4,590,000 | |
| | | 84B | 5,100,000 | 510,000 | 4,590,000 | |
| | | 115 | 4,900,000 | 490,000 | 4,410,000 | |
| | | 142A | 4,900,000 | 490,000 | 4,410,000 | |
| | | 142B | 4,900,000 | 490,000 | 4,410,000 | |
| | | 182 | 6,400,000 | 640,000 | 5,760,000 | |
| 주방 | 장식장 | 84B | 3,200,000 | 320,000 | 2,880,000 | 홈바 장식장 + 벽면 세라믹타일 |
| | | 115 | 1,800,000 | 180,000 | 1,620,000 | 복도 유리 장식장 |

5) 욕실 특화

| 품 목 | |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잔금 (90%) | 비고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수전류 | 세면기수전+샤워수전+욕조수전+세면대+비데일체형 양변기 | 84A | 2,400,000 | 240,000 | 2,160,000 | 세면기수전2(공용,부부) + 수납형 샤워수전1 + 욕조수전1 + 수입산세면대2(공용,부부) + 비데일체형 양변기2(공용,부부) |
| | | 84B | 2,400,000 | 240,000 | 2,160,000 | 세면기수전2(공용,부부) + 수납형 샤워수전1 + 욕조수전1 + 수입산세면대2(공용,부부) + 비데일체형 양변기2(공용,부부) |
| | | 115 | 2,100,000 | 210,000 | 1,890,000 | 세면기수전2(공용,부부) + 수납형 샤워수전1 + 욕조수전1 + 비데일체형 양변기2(공용,부부) |
| | | 142A | 2,500,000 | 250,000 | 2,250,000 | 세면기수전2(공용,부부) + 수납형 샤워수전2(공용,부부) + 수입산세면대1(부부) + 비데일체형 양변기2(공용,부부) |
| | | 142B | 2,700,000 | 270,000 | 2,430,000 | 세면기수전2(공용,부부) + 수납형 샤워수전2 + 욕조수전1 + 비데일체형 양변기2(공용,부부) |
| | | 182 | 2,900,000 | 290,000 | 2,610,000 | 세면기수전2(공용,부부) + 수납형 샤워수전2 + 욕조수전1 + 수입산세면대1(공용) + 비데일체형 양변기2(공용,부부) |
| | 세면대 하부장 | 115 | 3,800,000 | 380,000 | 3,420,000 | 공용 및 부부욕실 세면대 + 하부장 |

6)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추가선택품목 | 국민은행 | 978201-01-015031 | 효성중공업(주)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가 각각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은 계약금(현금, 수표 등) 수납 불가]

※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101동 1101호의 경우, 입금자명을 '1-1101홍길동'으로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3) 유의사항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함

•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에서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 등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하며, 기타 신청형 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해당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사유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함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은 검사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브랜드별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빌트인 가전 및 붙박이가구 선택시 설치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임
- 주방 가전 선택 시 주방가구의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중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 사항 (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냉매배관은 타입별 본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되며 본 내용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공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운영상 사유로 냉난방 공용 제품을 설치 하였음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각 호수 별로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변경으로 거실 우물천장의 모양도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에어컨 루버와 입주자가 설치하는 실외기간의 높이 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외기 받침대의 설치에 입주자 공사분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및 전용 콘센트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만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 또는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중 전기쿡탑(인덕션) 관련 유의 사항

- 유상옵션 전기쿡탑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임
-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쿡탑 선택시 상판 타공 치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중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관련 유의 사항

-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 또는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식기세척기와 동일한 크기의 수납가구가 제공됨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시 바닥, 벽에는 별도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걸레받이 높이는 브랜드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식기세척기 LG전자 제품을 선택 한 경우 가구 패널 마감으로 시공되며 계약자가 별도로 패널을 선택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중 빌트인 냉장고(오브제패키지) 관련 유의 사항

-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되며, 공간의 상부에는 수납장이 설치됨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음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측면 틀장의 형태, 사양, 손잡이는 변경 될 수 있음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키큰장은 타입별로 사이즈 및 구성이 다르오니 옵션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빌트인 냉장고 선택시 타입에 따라 가전 배치 순서 및 가전, 가구의 열림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 프리미엄 주방가구와 동시 선택시 냉장고장 및 키큰장 색상이 변경되며,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 및 컬러가 바뀔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임

• 추가선택품목 중 현관중문 관련 유의사항

- 현관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됨
- 압력을 가하여 여닫기를 할 경우 도어댐퍼기능으로 인하여 중문 프레임과 도어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음
- 본 시공시 제품의 상하부 레일, 손잡이 디테일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중 마감 업그레이드 관련 유의사항

- 아트월 세라믹 타일 설치 시에는 기본 제공되는 아트월 타일은 제공되지 않으며, 옵션가는 이를 반영한 금액임.
- 아트월 세라믹 타일의 무늬는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 및 컬러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임.
- 히든도어 적용은 안방/침실1/침실2 및 공용욕실, 다용도실(해당시)만 적용됨. (이 외 도어는 미적용)
- 115타입 와이드 드레스룸 평면 옵션(선택시) 마감재 설치 구간이 변경되며 이에 대해 계약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중 조명 업그레이드 및 공통 유의사항

- 추후 소비자가 직접 조명 교체 시 등보강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음.

- 우물천정 크기는 타입마다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평면 컨디션에 따라 픽처레일 간접등의 길이 및 적용 부위가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거실 우물천장 부착형 조명 및 복도 픽처레일 간접등은 라인조명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거실 우물천장 부착형 조명 및 복도 픽처레일 간접등은 우물천장, 커튼박스 길이보다 짧게 설치됨
- 색온도, 디밍 제어시스템은 조명의 색온도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조명기구는 전용의 컨트롤러(월패드, 디밍 스위치)가 설치되며, 입주자가 개별 구매하는 조명기구의 경우 연동이 안될 수 있으며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중 욕실 스마트환기팬 공통 유의사항
- 욕실 스마트환기팬 옵션 선택시 기본 설치되는 욕실팬은 설치되지 않음
- 욕실 스마트환기팬 옵션 선택시 2개소(공용욕실, 부부욕실)에 설치되며 리모컨으로 제어할 수 있음
- 욕실 스마트팬 옵션 선택에 따라 욕실 천정, 점검구, 욕실 등의 설치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 |
|----------|-------------|
| X | 참고사항 |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2028년 03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임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임
 -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아파트 554대, 근린생활시설 6대, 총 560대 (장애인주차 13대 포함), 경로당, 어린이집, 공동체커뮤니티, 카페, 독서실, 골프연습장, 승하차장,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대, 쓰레기보관소, 경비실, 관리사무소 외
- ※ 주차대수, 확장형 주차비율, 장애인주차 및 전기차 충전 위치, 하역공간 등은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주차장 차량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는 단지주출입구 2.7m 미만, 지하층 차로의 유효높이는 2.3m, 주차구획 2.1m임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자금보증서를 취득하여 (주)전북은행 및 (주)광주은행에서 대출 지원받은 사업장으로, 해당 대출은 입주시 입주자 명의로 대환될 수 있음.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관련 특약사항
 -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시행위탁사 주식회사 도담하우징과 시행수탁사 우리자산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시행위탁사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주)이 공급하는 것으로서, 우리자산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시행수탁사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시행위탁사 도담하우징 주식회사임을 매수인은 인지하

고 동의한다.

(2) 시행수탁사 우리자산신탁(주)은 시행위탁사 도담하우징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시행위탁사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도담하우징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3)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우리자산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시행위탁사 도담하우징 주식회사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4)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사 주식회사 도담하우징 주식회사 또는 시공사 효성중공업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6) 매수인은 반드시 우리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우리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7)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도금대출 제한비용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 금융기관 미확보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축소)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축소),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시행위탁사 도담하우징 주식회사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9) 우리자산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시행위탁사 도담하우징 주식회사와 매수인간에 또는 시공사 효성중공업 주식회사와 매수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우리자산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10)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특한 아파트 임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서 기간 |
|--------------------------|---------------------------------------|--|
| 제 01282024-101-0010000 호 | 일천팔백일십육억칠천일백만원정 (₩181,671,00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
|---|
|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④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
|--|
|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X 단지 여건 등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건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조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및 설계의 변경 등으로 계약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다만,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시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 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이상 입주예정자("계약자"를 말함)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통지는 설명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설명회 당일 미 참석

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외부 여건

1) 일반 공통

- 당 사업은 2023년 01월 최초 사업계획승인 인가를 득, 2024년 03월 사업계획변경승인 1차, 2024년 05월 사업계획변경승인 2차, 2024년 08월 사업계획승인 3차를 득한 사업으로 일부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됨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건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www.둔산해링턴플레이스리버파크.com)를 참고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주동 하부에 일부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본 아파트 주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기계/전기 관련 설비가 공용공간에 설치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1층에 필로티에는 각동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자전거보관소,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외부조경, 조명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눈부심 및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주동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조명·태양광 발전설비·외부 별도 마감재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 및 지붕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분양 홍보에 활용된 각종 인쇄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공급 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입체도,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VR, 홍보영상,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 시야간섭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건축물(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상가)의 외관,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크기, 축벽, 경관조명, 태양광발전패널, 외부색채, 난간색상/재질, 외부 로고사인의 형태/위치/내용, 시설물, 식재 및 포장계획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에 의거 하여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협의 및 시공시 현장여건,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건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의 외관 홍보영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당 사업부지 주변 및 대지경계선의 외부는 축소, 생략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 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고,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분양 전 최종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 준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견본주택,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분양 이후 건축물(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상가)의 외관,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및 크기, 축벽 디자인, 경관조명, 태양광 발전설비의 용량/수량/위치, 외부색채, 난간색상 및 재질, 외부 로고사인의 형태/위치/내용, 시설물, 식재 및 포장계획 등은 인허가협의, 시공시 현장여건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로 마감되며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는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의 위치, 입면타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 단지모형에 표현된 경관조명의 표현 방식과 색상은 모형 연출용이며, 인허가 협의 및 시공시 현장여건,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지모형에 표현된 태양광 패널은 모형 연출용이며, 인허가 협의 및 시공시 현장여건,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용량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아파트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의 돌출장식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동일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의 위치, 입면타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아파트의 동출입구, 필로티 및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 마감재 등은 동별 여건에 따라 상이함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 로고 사인의 경관조명 등의 형태/위치/내용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및 포장,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규격, 재질,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조경을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치금이 부과됨
 - 단지 내 시설물과 외부공간의 명칭, 부대시설의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경관조명,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영구배수시스템, 수목관리, 전기차충전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옥외공간에서의 개인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그 책임이 있음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 면적으로 산입하였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 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및 비상발전설비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각종 환기구(D.A 등) 및 천정의 면적 및 위치가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추가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는 84A, 115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발코니 변화여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지붕 및 옥탑에 위성안테나, TV 공청 안테나, 이동 통신 중계기, 피뢰침, 저수조, 태양광발전설비, 경관조명, 항공 장애등, 인명 구조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조망등에 의한

사생활이 간섭 받을 수 있음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부지 북측에 위치한 공공기여 용지는 향후 개발이 진행될 예정임을 인지하여야 하고 공공기여 용지의 계획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조망권, 일조권 등에 대해 일부 간섭이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 사업주체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인지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내 개방감 확보를 위해 세대 일부 입면 분할 창호를 적용하여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나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외부 입면 장식물, 바닥마감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는 사다리차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스위치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견본주택에 없는 타입의 조명기구는 호실의 형태에 따라 견본주택의 조명기구와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단지 외관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담장은 설치되지 않으나 인허가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음
- 소방용 공기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에 의한 폐사를 줄이기 위해 조류충돌 저감 방안으로 전세대 전면창에 조류충돌방지 테이프, 필름, 스티커 등을 설치 할 수 있음
- 단지내 동파방지용 열선, 환기팬, 영구배수,잡배수 펌핑용 배수의 등 공용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급수시설은 동절기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웬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지붕층 일부에는 DA, 실외기실, 제연웬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미관,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우수조 등(주거, 비주거 포함)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정화조 배기덕트가 매립설치되며, 옥탑 일부구간 덕트 및 송풍기가 노출될 수 있고 소음 및 냄새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각종 배관(급수,급탕,난방,오배수 등)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세대 내부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미건립세대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단지 주변상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 및 시공상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단지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대비 도막두께가 변경될수 있음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드레스룸/침실 불박이장, 선반가구,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람
 - 본 견본주택 건립 타입(84A, 115)외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견본주택 미건립타입인 (84B,142A,142B,182)는 건립타입과 마감색상 및 디자인이 유사함 단, 건립형과 미건립형 공간의 크기 및 형태, 가구 레이아웃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선택형 타입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이 불가함
 - 선택형 타입에 따라 공간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니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중간 분할바 높이, 손잡이 높이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프레임 및 유리)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잠금장치사양,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및 욕실의 사용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바닥배수구의 위치, 설치 유무, 설치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부부욕실 바닥 배수 성능을 고려하여 샤워부스의 설치 위치 및 규격은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하향식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불박이장, 주방가구, 선반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파우더장, 불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확장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내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 커튼박스의 길이는 천정배관 등 본 시공시의 공사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세대 난간의 개폐기능은 견본주택 피난을 위한 동선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시트, 타일, 인조석, 천연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렵고,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으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단위세대에 시공된 타일의 무늬는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임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
- 모든 주택형은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되며, 실외기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음.
- 각 세대의 침실1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사다리도 설치되어 화재시 하부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임의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하오니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피난 대피를 위한 하향식피난구의 해당 점검구의 위치는 층별로 다름(층별 교차 시공)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 일부 발코니 (다용도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배관이 노출되며,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의 거실/알파룸 통합형 선택시 우물천정, 조명, 배선기구 등의 수량 및 위치가 변경 됨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에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외부 환기캡(후드캡)으로 인해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1,2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욕실 일부부분만 바닥난방이 설치되며, 욕조 하부 및 샤워부스 내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2,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 제어됨.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확장 시 제공되는 평면은 제공되지 않으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발코니 난간의 높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고, 본 공사시 옵션 등 기타 여건에 의해 노출배관이 시공될 수 있음
- 렌지후드 환기 덕트와 주방자동식소화기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장 내부에는 바닥난방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어 공간이 협소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은 실외기실, 발코니1, 발코니2, 욕조하부, 신발장, 샤워부스 및 도기하부는 제외되며, 마루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음
- 계약자가 사용 중 또는 구매 희망하는 가구(식탁, 침대 등) 및 가전기기는 사이즈, 형태 등에 따라 배치 불가 또는 복도면 노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단차 부위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도어락은 홈네트워크 연동 디지털 도어락 제품이며, 입주 후 디지털 도어락 임의 변경 설치 시 연동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월패드, 욕실스피커폰 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 에어컨 실외기실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삼상 전원은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함
- 단위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으며, 회로 수는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설비기구 및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안방, 주방, 복도, 침실(출입문 뒤편) 중에 한 곳에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는 다를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음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 기능 중 가스밸브 차단기능을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하며,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세대는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정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함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음

3) 공용부/단지 내 환경

- 단지 내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 정압기 및 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디자인, 마감재, 색채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각 동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동 주출입구의 형태 및 사이즈는 동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주동 공용홀에 근린생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 홀은 101동만 창문이 설치되며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되고 크기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람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문은 크기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녹지, 조경 식재, 시설물, 포장, 옥외공간디자인,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재질 등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보행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해당 시설의 상부공간, PIT, 부대시설 주변 등에 설치되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계획은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유지관리 적절성, 자연재해, 수급문제 등에 따라 수종, 규격, 일부 수량과 위치 등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입면, 마감재,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상),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 1층에 설치되고, 재활용품 보관소는 지하1층에 설치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지하주동출입구 인근에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주동 출입구 및 주동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자전거보관소, 환기구(D.A), 실외기, 천창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헬륨, 실외기, 환기구(D.A)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시설물, 실외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은 인허가 과정, 현장여건, 디자인개선 등에 따라 자재, 디자인, 규격, 수량, 배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부 포장의 규격, 재료, 시공공법,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각동 1층 주동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었으며, 설치 위치 및 수량, 디자인,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냄새, 악취발생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 다양한 평면 타입이 혼합된 단지의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개발,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식재 위치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놀이터, 환기구(D.A),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녹지, 어린이집,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4. 단지 내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보행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주차관련시설의 경보음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해당 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람)
 - 외부시설물, 아파트 외관 및 색채, 동현관 및 저층부 석재 패턴, 옥탑 및 지붕디자인, 부대복리시설 외관, 야간경관조명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의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외부시설물, 옥탑 및 지붕구조물 및 디자인을 위한 각종 조형물 등의 골조는 철근콘크리트조(PC조 포함), 철골조 등 요구되는 구조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골조형식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차로(단지 내외 도로와 비상차로), 야간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경사로, 계단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 등과의 인접 또는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 포함)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식재, 시설물, 옥외공간디자인, 배치, 색채, 수량, 배치, 포장 등은 그 형태나 재료,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후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입주고객을 위한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입주관리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및 각종 조경시설물의 경우 안내사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와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용도 외 사용, 과도한 하중이나 충격, 시설의 임의적 개조 등 입주민의 사용상 개인부주의 및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건설사의 귀책이 아님
- 입주 후 수목 유지관리 활동은 입주자 관리사항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발생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음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과 이용자에게 있으며, 입주민의 편의 및 자의에 의한 훼손 및 임의변경 시, 이는 민원요소가 되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발생 및 조망권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본 단지는 각종 하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1개층으로 설치되어 근린생활시설 상부 또는 주변에 상업시설 업종에 따라 주방환기를 위한 배기덕트와 탈취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 동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발생, 조망권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체 기둥구조물에 의해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임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계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경관조명은 빔공해 심의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위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지하층에 제연웬룸 및 주차장 배기웬룸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각 동 최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건물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기압차로 연돌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여닫음에 어려움과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연돌현상 방지를 위해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홀 공간에 추가시설(방풍구획, 도어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통행의 불편, 계약면적에 증감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기계/전기실/발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등의 공용 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및 진동,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홈네트워크 설비는 모델하우스 사양에 따라 시스템 장비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CCTV를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주요 방법 및 방제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으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동 배치, 일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될 수 있음)
-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설비,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명 및 빛의 산란, 기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건축물 측면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수량 및 종류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 1층 및 2층 주차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여 이동통신설비를 각 동 옥상층/ 기계실 또는 EPS/TPS실에 설치 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102동 옥상층에는 아파트 TV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며 위치 및 규격/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동 및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 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사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동별 형태, 세대수, 세대 면적 및 층수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 속도 및 사양에 차이가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소방안전계획은 소방기관의 현장실사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소방차의 진입과 회전, 정차 등을 위한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재질 및 기타계획이 입주자의 동의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소방안전매트 설치구간을 계획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구간은 조경식재가 불가할 수 있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가능하고,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안전매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동 옥탑 지붕에는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되어 비상시(화재발생 등 인명구조필요시)에만 출입이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출입이 제한됨

4)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 및 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공동체커뮤니티, 카페, 독서실, 골프연습장 지하주차장이며, 기타시설로 외부휴게공간,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 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 예정이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대복리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운동시설은 실내용 헬스운동기기와 고정형 가구(주방가구,신발장, 락커 등)는 설치되나, 이동식 가구(책상, 의자, 테이블, 소파, 인테리어 비품 등)와 비품은 제외되고, 인포메이션 데스크 및 불박이형 가구의 형태 또는 디자인은 카달로그에 게시된 그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제 공사시 공동주택 피트니스의 운동기구 종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승인 및 변경도서와 상이할 경우 카탈로그를 우선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최종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의 주요구조부(보, 기둥, 슬래브)는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구간 또는 전체구간에서 구조공법이 변경될 수 있고, 요구되는 구조성능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재료의 강도, 철근배근, 부재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의 평면 계획 및 창호 등의 위치 등은 입주자의 편의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공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배관 등의 간섭으로 인해 다소 변경(증감) 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택배차량으로 인해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2.3미터, 주차구획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임
- 택배차량 및 쓰레기 수거차량은 단지 주출입구를 통해서만 진입 가능하며, 진입가능 유효높이는 지상 1층 램프 주출입구 및 지하 1층 통로 2.7m 미만임
- 아파트 주차대수는 554대이며, 근린생활시설 6대 총 560대 설치 예정임.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5)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주차는 근린생활시설 후면 지상 1층에 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주출입구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아파트와 주차출입 통행로로 일부를 공유함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는 상업시설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 및 주방환기를 위한 탈취기가 설치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인근 동에 소음 및 진동, 냄새발생, 조망권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상업시설 탈취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동에 소음 및 진동, 냄새발생, 조망권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천장고는 현황측량결과 및 설비, 전기배관 등의 간섭으로 인해 다소 변경(증감) 될 수 있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점포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소방설비는 소방관계법규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 있음 특정시설 입점 시는 입점자가 별도의 소방시설을 추가하여야 하며, 인테리어공사 시 스프링클러 위치 등이 변경 될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입점 후 변경시도 동일)
- 상가별 전원공급, 소방 등 전기, 통신, 소방 시스템 설비가 건축 구조상 각 점포 상부 천장을 관통하여 설치되며 건물의 유지 보수 시 다른 매장 내부에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상가 전기사용량 검침은 별도의 원격검침 시스템이 없으며, 공용판넬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조명기구는 LED 조명으로 시공되며, 등기구 교체 공사를 할 경우 입점자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함

- 전화, 인터넷 및 유선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시공되어 있으며, 사용을 위한 신청은 입점자가 직접 기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야함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본 제공되는 전기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함

6) 단지 외부 여건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함
- 본 사업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일부 조망권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초등학교 배정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소재 월평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지원청) 결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 가로녹지는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관련 민원을 시공사로 할 수 없으며,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설계관련 변경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세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채광용,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생태면적률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 및 동선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층고, 근린생활시설 층고,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각종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음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소음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됨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함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함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 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예에 의해 당첨된 주택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1의 3호에 의하여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거래 신고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계약 후 입주 할 수 없으며, ②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 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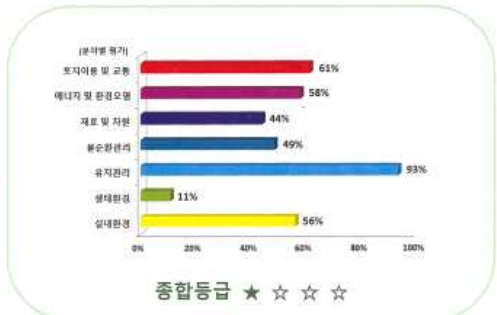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 대전 월평동 1491 주상복합 신축공사 | 인증번호 | : G-SEED-P-2024-0459-9 |
| 건축주 | : 우리자산신사 주식회사 | 인증기관 |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준공(예정)일 | : 2027년 10월 29일 | 유효기간 | : 2024. 05. 22. ~ |
| 주소 |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재대로 5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491번지 일원)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짜자 | |
| 층 수 | : 지하 4층, 지상 35층 | 인증 등급 | |
| 면적 | : 65,755.9783㎡(영기면적 : 65,106.8250㎡) | 인증등급 | : 일반(그린4등급)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공동주택 | 인증기준 |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
| 설계자 | : ㈜아이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 고시 제2023-147호 |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일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5월 22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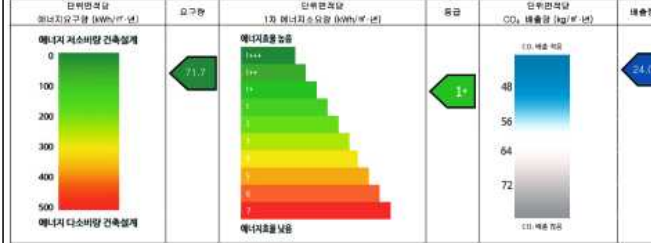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 대전 월평동 1491 주상복합 신축공사 | 인증번호 | : 24-주-에-14-0003 |
| 준공연도 | : 2027(029) | 평가자 | : 입당정 |
| 주소 | : 13편 사무 유휴재대로 5 | 인증기관 |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 층 수 | : 지하4층 / 지상35층 | 운영기관 | : 한국에너지공단 |
| 연면적 | : 65755.9783㎡ | 유효기간 | : 시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공동주택 | 인증등급 | : 1+등급 |
| 설계자 | : (주)아이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
|----|------------------------|------------------------|--------------------|------------------------------------|
| 냉방 | 0.9 | 0.9 | 3.0 | 5.0 |
| 난방 | 83.1 | 59.2 | 45.5 | 12.3 |
| 급탕 | 30.7 | 35.2 | 25.1 | 7.2 |
| 조명 | 7.9 | 7.0 | 18.2 | 3.3 |
| 환기 | | 2.7 | 7.3 | 1.2 |
| 합계 | 71.7 | 104.1 | 99.1 | 24.0 |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이 설치된 난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차액, 기공, 연소, 변환, 열교환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되어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풍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받았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내진설계 관련 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등급 | 최대응답가속도 | 메르칼리 진도 등급 |
|------|---------|------------|
| I | 0.224g | VII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
|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또는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 구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
| 회사명 | (주)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 (주)세종기술단 | (주)한국소방엔지니어링 | (주)아이팝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 감리금액 | 2,336,155,800 | 570,917,000 | 104,497,200 | 275,000,000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상호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
| 시행수탁사 | 우리자산신탁(주)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빌딩 13층 | 110111-2003236 |
| 시행위탁사 | (주)도담하우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 33번길 22-4, 204호 | 160111-0514574 |
| 시공사 | 효성중공업(주) | 서울시 중구 퇴계로 67, 27층 외 | 110111-6770154 |

■ 견본주택 안내

둔산 해링턴플레이스 리버파크 견본주택



- 위치안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7-5
- 운영기간 : 견본주택 오픈 ~ 분양 종료 시
-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의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견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10:00~17:00
- ※ 정부방침에 의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견본주택 입장 및 상담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PC, 모바일)

■ 공식홈페이지 : www.둔산해링턴플레이스리버파크.com

분양문의

■ 둔산 해링턴플레이스 리버파크 : ☎1800-1890 (10:00 ~ 17: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